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현창	780205-1*****

■ 보장성보험료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류				
종 류	사업자번호	<u> </u>	증권번호		주피보험자	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		종피보험지	ł2	종피보험지	-3	
	삼성화재해상보	험 (주)	개인용애니	카			
보장성	202-81-4	5***	11437999010)***	780205-1****	이현창	941,840
	푸르덴셜생명보	험 (주)	변액유니버셜종· 배당)	신 (무			
보장성	120-81-39	9***	1440062**	**	780205-1****	이현창	1,092,000
	인별합계금액						2,033,840

- 1. 세액공제대상금액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(나이요건 제한 있음)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.
- 2.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: 보장성 보험료(연 100만원),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(연 100만원)





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이현창	780205-1*****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1-09-88*	푸**	일반	14,800
1-12-82*	명****	일반	12,200
1-16-39*	클***	일반	10,900
1-90-90*	명*****	일반	717,8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755,7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755,700

- 1. 세액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- ※ 사내근로복지기금,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,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・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(보약포함)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
- 2.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: 본인·장애인·만65세 이상(한도없음),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





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이현창	780205-1*****	

■ 2013년도 사용액 계

일반	1,645,466	!-!	
전통시장	0	인별합계 금액	1,645,466
대중교통	0		

■ 2014년도 사용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
120-81-54***	롯데카드 주식회사	일반	7,398,680
120-81-54***	롯데카드 주식회사	전통시장	15,000
120-81-54***	롯데카드 주식회사	대중교통	200,400

- 1. 공제대상금액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·직계존비속·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15%(직불·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30%) *다만,'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'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'14년 하반기 직불카드·선불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이 '13년 연간 사용액의 50%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%
- 2. 공제한도 :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(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)
- ※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(선불)카드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이현창	780205-1*****	

■ 2014년도 사용내역

(단위:원)

사 업 자 번	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
202-81-45	202-81-45*** 삼성카드주식회사		일반	3,248,440
214-81-37	***	비씨카드 (주)	일반	1,015,400
214-81-37	***	비씨카드 (주)	대중교통	18,650
OLH THE	일반			0
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	전통시장		0	
	대중교통			0
	일반			11,662,520
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	전통시장			15,000
27 7.10	대중교통	219,		
인별합계급	인별합계금액 11,		11,896,570	

- 1. 공제대상금액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15%(직불·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30%) *다만,'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'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'14년 하반기 직불카드・선불카드・현금영수증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이 '13년 연간 사용액의 50%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%
- 2. 공제한도 :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(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)
- ※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(선불)카드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

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등]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이현창	780205-1*****	

■ 2013년도 사용액 계

일반	0		
전통시장	0	인별합계 금액	0
대중교통	0		

■ 2014년도 사용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	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
214-81-37	***	비씨카드 (주)	일반	204,600
01111 1111 71	일반			0
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	전통시장			0
LAI AI O I	대중교통			0
01111 -1111 -11	일반			204,600
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	전통시장			0
	대중교통			0
인별합계금	글액			204,600

- 1. 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・직계존비속・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15%(직불·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30%) *다만, '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'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'14년 하반기 직불카드・선불카드・현금영수증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이 '13년 연간 사용액의 50%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%
- 2. 공제한도: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(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)
- ※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(선불)카드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

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[현금영수증]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현창	780205-1*****

■ 2013년도 사용액 계

일반	0		
전통시장	0	인별합계 금액	0
대중교통	0		

■ 2014년도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월별 공제대상금액				
현금영수증 중	종류 -	1월	2월	3월	4월	공제대상금액
		5월	6월	7월	8월	
		9월	10월	11월	12월	
현금영수증		0	68,020	0	0	
	일반	0	0	0	9,900	260,290
		28,450	71,960	19,900	62,060	
일반						68,020
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	전통시장					0
	대중교통					0
0114 -111121	일반					192,270
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	전통시장					0
	대중교통					0
인별합계금액 260,25			260,290			

- 1. 공제대상금액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15%(직불・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30%) *다만, 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'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'14년 하반기 직불카드・선불카드・현금영수증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이 '13년 연간 사용액의 50%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%
- 2. 공제한도: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(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)
- ※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(선불)카드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

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[기부금]

■ 기부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현창	780205-1*****

■ 기부금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단 체 명	기부유형	기부금액 계
110-82-00282	(학) 연세대학교	법정기부금	120,000
인별합계금액			120,000

- 1. 세액공제대상금액: 근로자(사업소득자) 본인,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(단,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금액에 포함)
- ※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
- ▶ 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대상금액 공제한도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